

중일전쟁 이후 일본의 음반검열에 관한 연구*

이 지 선**

(e-mail : koto@snu.ac.kr)

目 次

1. 서론
 2. 음반검열의 배경과 법률의 제정
 3. 음반검열의 기준과 방침
 4. 음반검열의 규모
 5. 음반검열의 사례
 6. 결론
-
-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전시 하에서 대중을 선동, 통제하고 문화권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중음악정책을 펼쳤는지 음반검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중일전쟁 전후에 음악통제는 음반검열을 시작으로 음악가·무용가의 등록제도, 대정익찬회 문화부의 음악기본방침에 의한 교화활동, 음악정신대의 활동, 후생음악활동, 음악잡지의 통합, 결전체제 하의 연주회 등에서 나타나고, 1940년대에 들어서는 미영음악 추방운동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음악에 대한 권력의 다양한 통제정책 중 대중오락을 담고 있는 음반에 대한 검열은 일본이 당시 문화권력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411-J00702).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전시 하 일본의 대중음악(유행가, 대중가요)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가요사와 음반사에 대한 연구이다¹⁾. 이들 연구에서는 음반검열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전체적인 내용이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고찰하고 있지 않다. 이 중 1934년 8월 1일 음반검열이 시작되면서부터 내무성 경보국 도서과에서 검열에 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음반검열주임 오가와 치카고로(小川近五郎)가 저술한 『유행가와 세상』은 당시 검열에 관한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음반검열에 대해서 단편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있을 뿐 그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논하고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중일전쟁 전후 일본의 음반검열의 배경, 적용된 법률, 검열의 기준과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검열 사례를 통하여 전시 하 음반검열의 규모와 실상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주요 연구 자료로는 당시 음반검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출판경찰보』²⁾와 검열에 적용된 법률 등을 알 수 있는 『관보』(官報) 그리고 각종 음악 및 음반관련 잡지와 신문 등을 사용한다. 특히 내무성 경보국에서 발행한 『출판경찰보』는 검열을 통해 어떤 음반이 문제시 되었고 어떠한 처분을 당했는지를 1934년 8월부터 1937년 12월까지 기록하고 있어, 중일전쟁 전후의 음반검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음반검열의 배경과 법률 제정

음반의 검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배경에는 5·15사건³⁾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5·15사건은 1932년 5월 15일 육해군 혁신파의 청년 장교가 수상

1) 小川近五郎, 『流行歌と世相 : 事変下に於ける歌謡の使命』日本警察新聞社, 1941. 森本敏克, 『音盤歌謡史』白川書院, 1975. 古茂田信男외, 『新版 日本流行歌史』上·下, 社會思想社, 1994. 矢沢寛, 『戦争と流行歌—君死にたまふことなかれ』社會思想社, 1995. 倉田喜弘, 『「はやり歌」の考古学—開国から戦後復興まで』文芸春秋, 2001. 倉田喜弘, 『近代歌謡の軌跡』山川出版社, 2002. 倉田喜弘, 『日本レコード文化史』岩波現代文庫1100, 岩波書店, 2006. 菊池清麿, 『日本流行歌変遷史』論創社, 2008. 戸ノ下達也·長木誠司, 『總力戦と音楽文化—音と聲の戦争』青弓社, 2008.

2) 内務省警保局, 『出版警察報』제71-113호, 1934-1938, 복제판, 不二出版, 1981-1982.

3) 1932년 5월 15일 육해군 청년 장교들에 의한 반란 사건. 우익 활동가인 이노우에 닛쇼(井上日召)를 중심으로 한 혈맹단의 영향을 받은 급진파 해군 청년 장교가 육군사관학교 생도와 애향숙생(愛郷塾生)들과 결탁하여 수상 관저를 습격하고, 당시 수상이었던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를 암살했으며, 일본은행, 경시청, 정우회(政友會) 본부 등도 습격했다. 정당정치를 공격하고 군국주의적인 국가개조를 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군부는 사건을 정치적 진출에 이용하고 사이토 마코토(齋藤実) 거국일치 내각을 성립시켜 정당 내각은 끝을 맺었다.

관저 등을 습격하고, 수상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를 사살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과 대중문화와의 관련은 영화와 음반 등에서 나타났다. 생생한 사건은 인심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무성은 엄격한 자세로 임하였다. 1933년 10월 7일자 『東京日日新聞』은 5·15사건과 관련된 음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고 있다.

5·15사건을 일으킨 피고를 기리고 걱정하는 듯한 음반, 영화, 나니와부시(浪花節), 고단(講談) 등이 계속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내무성에서는 전국을 사찰하던 중, 나고야(名古屋)의 아사히축음기가 <소화유신행진곡> 해군의 노래 및 육군의 노래 1장과 <혈루의 법정> 해군공판부 2장, 합계 3장의 음반을 발매했다는 보고를 듣고, 6일 오전부터 내무성 경보국에서 검열한 결과, 그 내용 및 가사가 피고를 기리고 있어, 사건의 기억이 아직 생생할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음반은 치안경찰법 제16조, 음반설명서는 출판법 제19조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 해당 음반을 가두(街頭)에서 연주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통첩을 전국에 내렸다.(이하 생략)⁴⁾

이 기사에서 보듯이 5·15사건을 제재로 삼은 3장의 음반은 치안경찰법 제16조에 의해서, 음반설명서는 출판법 제19조에 의해서 처분되어 가두에서 트는 것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치안경찰법으로는 가정 내에서 음반을 듣는 것까지는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사히축음기는 가사설명서 없이 음반을 계속 발매하였다. 내무성도 그 이상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내용을 방치할 수 없어 아이치현 보안과(愛知縣保安課)는 아사히축음기상회의 책임자에게 출두를 요구하여 간담하였고, 그 결과 발매회사는 10일 자발적으로 남은 음반을 폐기하기로 하여 이 음반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⁵⁾

그럼 앞의 음반검열에 적용된 치안경찰법 제16조와 음반설명서 처분에 적용된 출판법 제19조가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자.

치안경찰법 제16조 가두(街頭), 그 외 공중이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장소에서 문서, 도서, 시가(詩歌)의 게시, 반포, 낭독 또는 방음(放吟)이나 언어형

4) 「アサヒレコードを街頭で演奏差止め」, 『東京日日新聞』 1933년 10월 7일자 11면.

5) 나고야시의 아사히축음기상회에서 제작 발매한 쓰루레코드의 5·15사건의 묘사극 <혈루의 법정>은 현특고과(県特高課)에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음반의 가사카드의 반포금지를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음반의 압수는 법규상 어떻게 할 수 없고, 오직 치안경찰법 제16조에 의해서 공공장소에서 틀지 않는 정도로 얼버무리고 있었는데, 10일 아이치현 보안과에서는 아사히축음기상회의 이토(伊藤) 상무를 불러 간담한 결과, 상호축이 자발적으로 남은 음반을 폐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특고와 보안 두 과의 골칫거리였던 <혈루의 법정>도 종막을 알리게 되었다. 「“血涙の法廷”閉幕」, 『名古屋新聞』 1933년 10월 11일자 10면.

용, 그 외의 작위를 하고, 그 상황이 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경찰관에 있어서 금지를 명할 수 있다.⁶⁾

출판법 제19조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도화를 출판했을 때는 내무대신은 그 발매반포를 금하고, 그 각판(刻版) 및 인본(印本)을 차압할 수 있다.⁷⁾

이러한 치안경찰법과 출판법에 의해서 안녕질서를 문란하게하고 풍속을 괴란시킨다고 판단되는 음반의 거리연주는 금지할 수 있지만, 음반에 대한 명확한 검열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음반을 몰수할 수는 없었다.

이렇듯 음반에서 문제가 계속되자, 내무성은 음반을 도서관의 검열범위에 넣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바로 발매금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출판법의 일부를 개정하기로 하여 조사를 시작했고⁸⁾, 마침내 음반에 관한 문제는 1934년 3월 22일에 있었던 제65회 제국회의에서 정식으로 안건이 상정되었다. 제65회 제국회의 중의원 출판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제안된 출판법 개정의 요점은 4가지이다. 즉, 황실존엄을 모독하는 사항, 안녕질서를 방해하는 사항, 범죄를 선동하는 사항 등을 출판물로 게재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을 만들고, 음반(축음기레코드)의 검열에 대해 출판법을 적용하는 것이 개정의 주안점이었다. 이 중 음반에 관해 안건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정부위원인 내무성 참여관(參與官) 가쓰카와 에이키치(勝川永吉)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네 번째로, 축음기레코드에 출판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종래 레코드에 대해서는 납부제도 및 검열제도 그 어느 것도 존재하고 있지 않아 겨우 치안경찰법에 의해 이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레코드의 보급발달과 함께 음외(淫猥)한 음곡을 취입하여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자가 있을 뿐 아니라 이것으로 불온사상을 선전, 선동하려고 하는 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축음기레코드는 그 법률적인 성질이 출판물과 매우 유사하여, 양자에 있어 단속 법규를 다르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축음기레코드에도 출판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⁹⁾

6) 印刷局, 『官報』 明治篇, 1900년 3월 10일, 5004호, p.154. 치안경찰법은 1900년(명치33) 3월 10일에 공포된 법률 제36호로 총 33조로 구성되었고 이 중 음반검열에 적용된 것은 제16조이다.

7) 内閣官報局, 『官報』 明治篇, 1893년 4월 14일, 2934호, pp.163-164. 출판법은 1893년(명치26) 4월 14일에 반포된 법률 제15호로 총 35조로 이루어졌고, 이 중 음반설명서 처분에 적용된 것은 제19조이다.

8) 「アサヒレコードを街頭で演奏差止め」, 『東京日日新聞』 1933년 10월 7일자 11면.

이 개정안은 제국회의에서 통과되어 일본에서 처음으로 음반에 대한 검열 기준이 마련되게 되었다. 음반 검열에 대한 개정법은 1934년(소화9) 5월 2일부 『관보』에 법률 제47호로서 공포되었다. 법률 제47호는 출판법 중 제16조, 제26조, 제27조의 부분적 개정과 함께 음반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36조가 새롭게 첨가되었다.

소화법률 제47호

제36조 본 법은 발매반포의 목적으로 음을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데 쓰이는 기기에 음이 복사된 것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저작자는 취입자로 한다.¹⁰⁾

음반을 출판물로 보는 이유는 그 제작방법에서 비슷하기 때문이다. 처음 취입을 하여 이것을 도금하고, 이후 마스터를 만들고 또한 마더를 제작하여 마더에 의해서 셀을 만들며, 셀에 의해서 다수의 음반을 찍어내기 때문에 인쇄물로 간주해도 무방하고,¹¹⁾ 발매반포 방법이 월간잡지와 거의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어 출판법의 적용에 의해서 충분히 단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¹²⁾

같은 해인 1934년 7월 18일부 『관보』에는 법률 제47호 개정출판법을 소화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칙령 제224호가 공포되었고, 이와 동시에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출판법 시행규칙이 내무성령 제17호로서 공포되었다. 칙령 제224호와 내무성령 제17호 출판법 시행규칙 중 음반에 관련된 항목만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칙령 제224호

소화9년 법률 제47호는 소화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무성령 제17호

제5조 축음기레코드(축음기레코드와 유사한 것을 포함. 이하 동)를 발행할 때는 제품 및 내용의 해설서 각 2부를 첨부하여 왼쪽과 같은 방식(축음기레코드 발행계 양식-필자 주)에 의한 신고서 2통을 내무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축음기레코드 발행계 양식)

9) 内川芳美編·解説, 「五五 出版法中改正法律案委員會議録」, 『マス・メディア統制 第1』現代史資料 第40, みすず書房, 1973, p.285.

10) 内閣官報局, 『官報』1934년 5월 2일, 2197호, p.33.

11) 「時の話題 レコードも検閲」, 『東京朝日新聞』1934년 8월 1일자.

12) 小川近五郎, 『流行歌と世相 : 事変下に於ける歌謡の使命』日本警察新聞社, 1941, p.111.

제호에 의해 내용이 분명한 경우는 해설서를 첨부할 필요 없다.

본 양식 중 저작권자의 연서(連署)를 대신하여 왼쪽 양식(축음기레코드 발행승낙서 양식-필자 주)에 의한 축음기레코드 발행승낙서를 첨부해도 상관 없다.

(축음기레코드 발행승낙서 양식)

제6조 축음기레코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축음기레코드의 명칭 및 번호(번호는 발행의 순서를 표시할 것)
2. 내용의 제호와 함께 원저작자 및 취입자(원저작자나 취입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3. 발행소의 명칭 및 발행지
4. 발행소와 제작소가 다른 경우에는 제작소의 명칭 및 제작지
5. 발행계를 내는 취지의 표시(예를 들어 「届出濟」, 「納付濟」)

부칙

본령 시행 전에 이미 발행한 축음기레코드가 본령 시행 후 계속 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령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레코드의 내용 해설서 2부를 첨부하고, 축음기레코드 명칭 및 번호, 내용의 제호 및 종류, 발행소 및 제작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신고서 2통(총목록 2통을 가지고 이것을 대신할 수 있다)을 내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¹³⁾

소화법률 제47호 개정출판법의 시행에 따라 1934년 8월 1일부터 음반은 출판물로 취급되어, 다른 출판물과 마찬가지로 발행 3일전까지 제품 및 내용 해설서 2부를 첨부하여 내무성에 제출하도록 되었고, 내무성 경보국은 이에 따라 새롭게 음반검열 업무를 시작하였다.

내무성령 제17호로 공포된 개정출판법 시행규칙과 함께 7월 18일부 경보국 도발갑(警報局圖發甲) 제7호로서 개정출판법 시행에 관한 통첩이 내려졌는데, 그 중 검열과 직접적인 관계있는 부분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보인다.

개정출판법의 시행에 관한 통첩(초)

4. 축음기레코드류에 대한 발매반포 금지처분

- (1) 레코드의 내용이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시키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내무대신에 의해 발매반포를 금하고 각관(스텝퍼, 마스터, 마더 등) 및 제품을 압수한다. (출판법 제19조 참조)
- (2) 차압 집행의 방법, 수속 및 그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준한다.
- (3) 차압할만한 제품 및 각관은 명치29년 2월 5일 훈(訓) 제2호 내무대신훈령에 기하여 상황에 따라 경찰관 입회하에 이것을 파기, 또는 그 외의 다

13) 內閣官報局, 『官報』 1934년 7월 18일, 2263호, pp.409-412.

른 방법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재료를 발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환부해도 무방하다.

- (4) 외국에서 제작된 레코드의 내용이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시키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내무대신은 그 레코드의 내국에서의 발매반포를 금하고 그 제품을 차압한다.(출판법 제20조 참조) 다만 레코드는 외국에서 각판(스텝퍼 또는 마스터)을 수입하여 내국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전계(1)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주의할 것.

- 6. 축음기레코드에 대한 그 외의 단속 규정에 대해서는 출판법의 각조를 참조할 것.¹⁴⁾

3. 음반검열의 기준과 방침

앞서 언급했듯이 음반검열은 안녕질서를 문란하게하고 풍속을 괴란시킨다고 판단되는 음반을 단속하기 위해 1934년 8월부터 개정출판법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럼 출판법이 정하고 있는 ‘안녕·풍속에 관한 출판물 검열 표준’¹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A 안녕문란 출판물의 검열표준

(갑) 일반적 표준

- (1)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사항
- (2) 군주제를 부인하는 사항
- (3)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등의 이론 및 전략전술을 선전하거나 그 운동의 실행을 선동하고 또는 그러한 종류의 혁명단체를 지지하는 사항
- (4) 법률, 재판 등 국가권력 작용의 계급성을 고조시키고, 그 외 이것을 심하게 극설하는 사항
- (5) 테러, 직접행동, 대중폭동을 선동하는 사항
- (6) 식민지의 독립운동을 선동하는 사항
- (7) 비합법적으로 의회제도를 부인하는 사항
- (8) 국군존립의 기초를 동요시키는 사항
- (9) 외국의 군주, 대통령 또는 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것이 위국교상(爲國交上)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14) 内務省警保局, 『出版警察報』 제71호, 1934, 복제판, 不二出版, 1981, p.71의 257.

15) 内川芳美編·解説, 「六一 安寧·風俗に関する出版物検閲標準」, 『マス・メディア統制 第1』現代史資料 第40, みすず書房, 1973, p.365.

- (10) 군사상 외교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기밀사항
 - (11) 범죄를 선동, 곡비(曲庇)하거나 범죄인 또는 형사피고인을 상훈(賞恤), 구호하는 사항
 - (12) 중대범인이 수사상 막대한 지장을 일으키고 그를 검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사항
 - (13) 재계를 교란하고 그 외에 현저하게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사항
 - (14) 전쟁도발의 염려가 있는 사항
 - (15) 그 외 현저하게 치안을 방해하는 사항
- (을) 특수적 표준
- (1) 출판물의 목적
 - (2) 독자의 범위
 - (3) 출판물의 발행부수 및 사회적 세력
 - (4) 발행당시의 사회사정
 - (5) 반포구역
 - (6) 불온 개소의 분량
- B 풍속피란 출판물의 검열표준
- (갑) 일반적 표준
- (1) 외설적인 사항
 - (2) 난륜적인 사항
 - (3) 낙태방법 등을 소개하는 사항
 - (4) 잔인한 사항
 - (5) 유곽, 마굴 등의 소개를 선정적으로 표현하거나 호기심을 도발하는 사항
 - (6) 그 외에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사항
- (을) 특수적 표준
- 특수적 표준으로서 고려하는 것은 안녕금지의 경우와 대동소위

위의 검열표준에 의하면, ‘안녕’에 관한 것은 황실의 모독과 군주제 및 의회 제도의 부인, 법률의 곡설, 공산주의·테러·범죄·식민지 독립운동의 선동, 군사·외교상의 지장 초래, 사회불안 야기, 전쟁도발의 염려 등이 일반적인 표준의 내용으로, 풍속에 관한 사항보다 여러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하고 있다. ‘풍속’에 관한 것으로는 외설·난륜·잔인한 사항, 풍속 저해, 선정적 표현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출판법의 검열표준이 음반검열에 적용된 것인데, 개정출판법의 시행 자체가 부적절한 내용을 정화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얻기는 했지만 음반의 오락물로서의 향락적 성격을 현저하게 바꾸게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음

반회사의 주요 영업목표는 대중에게 인기 있는 음반을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의 취미나 기호를 무시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음반의 내용은 크게 쇠퇴하지는 않은 것이다. 단숨에 대중의 기호가 향상하지 않는 한 검열에 관한 법률의 제정만으로는 그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다만 개정출판법에 의한 검열의 시행으로 단속을 요할 만한 내용의 음반은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는 거두었고, 음반 제조업자도 검열이 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초보다 긴장해서 당국에 성의 있는 협조를 보였다.¹⁶⁾

만주사변 후 1933년 사이토 마고토(齋藤實) 수상이 국민에게 ‘비상시의 각오’를 선언하고 1935년부터 천황중심의 국체명징(國體明徵), 침략미화의 팔굉일우(八紘一宇)¹⁷⁾의 바람이 불어, 1936년 2월 26일에는 청년장교에 의한 이른바 2·26사건¹⁸⁾이 일어났고 5월에는 노동제가 금지되는 등 단번에 군국주의적인 풍조가 높아지게 되었다.¹⁹⁾

그러나 비상시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회풍조는 여전히 향락적이고 이완되는 경향이 있었다. 음반에 담긴 유행가도 이러한 풍조에 따라서 단적으로 세상을 반영해 갔는데, 1936년 당시 유행한 곡을 보면 <하나요메코신쿄쿠>(花嫁行進曲), <와스레차이야요>, <아아 소레나노니>, <돈가라갓차다메요>, <닷테이야요> 등으로²⁰⁾, 비상시에 있던 당시의 시국과는 유리된 향락적이고 도피적 허무사상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가운데 1936년 7월, 내무성 도서과에서는 국민정신 작용이 강조되고 있는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당시 최고의 유행가였던 <와스레차이야요>에 대해서 발매반포와 거리공개를 금하고 그 아류작 4건은 모두 발매 전에 발매반포 금지처분을 내렸다. 당시 음반 단속에는 출판법을 적용하여, 음반을 제작하면 내무성에 제출하고 그 후 3일간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발매해도 좋다는 계출주의(届出主義)가 원칙이어서, 음반제조업들은 그 이전에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발매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방침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영화와 같이 음반 단속의 단행법(單行法)을 제정해서

16) 小川近五郎, 『流行歌と世相：事変下に於ける歌謡の使命』日本警察新聞社, 1941, p.111.
 17) 천황제 과시즘의 핵심사상으로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이 세계정복을 위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구호로, ‘온 세계가 하나의 집’이라는 뜻이다
 18) 1936년 2월 26일 동경에서 육군 황도파(皇道派) 청년장교들이 1483명의 병사를 이끌고 ‘소화유신 단행 존황토간(尊皇討奸)’을 외치며 일으켰던 반란. 사이토 마코토 내대신,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 장상, 와타나베 조타로(渡辺錠太郎) 교육총감 등을 살해했다.
 19) 矢沢寛, 『戦争と流行歌—君死にたまふことなかれ』社会思想社, 1995, p.66.
 20) 森本敏克, 『音盤歌謡史』白川書院, 1975, pp.97-102.

미리 허가를 받는 허가주의(許可主義)로 새롭게 검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²¹⁾

당국에서는 비상시를 강조하는 반면에 사회풍조는 향락적인 경향을 띠고 있던 차, 1937년 7월 7일 노구교(盧溝橋) 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발발했고, 제 1차 고노에(近衛) 내각은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추진하여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국민의 정신(별사봉공)을 강조했다. ‘거국일치’, ‘진충보국’, ‘견인지구’의 세 개의 슬로건을 걸고 국민을 전쟁수행에 협력시키려고 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고, 음반계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중일전쟁에 대처하는 검열방침으로서는 음반내용의 정화가 선결요건이었기 때문에 먼저 취입 상의 제한 사항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제재의 범위를 제한하고 보편성과 타당성을 결하는 이상하고 호기한 재료를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명확하게 한 것이었다. 둘째는 표현효과에 대한 제한이었는데, 그 방법으로는 우선 작사를 할 때 용어와 수사를 제한하고, 노래를 부를 때는 가창방법에 주의를 기울이며, 작곡을 할 때는 악기의 사용법에도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한은 지나치게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내용 등 정상적인 기분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점을 검열 기술에 의해서 도태하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²²⁾

이러한 제한 외에 음반에는 당시 일본이 당면하고 있던 중대 시국에서 오락이 담당하는 책무가 맡겨져 있었다. 즉, 음반은 당시 일본에 있어서 신동아 건설을 위한 총력전의 일부인 사상전의 병기로서 국민정신의 작흥과 전선 용사의 위안에, 또 후방에 있는 국민의 건전한 오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음반검열을 지도하는 측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이라는 시국에 대처하는 노래의 순응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 방침은 첫째, 내용이 시국과 유리되지 않을 것, 둘째, 적극적으로 시국 극복의 의식을 높이는 작품을 만들 것, 셋째, 온화하고 맑고 깨끗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거나 조용하고 안정적인 기분이 드는 작품을 제작할 것, 넷째, 사색과 반성의 자료가 되는 작품을 만들 것 등이었다. 이것은 검열상의 제한 사항과는 별도의 것으로, 이러한 점을 실현시키기 위해 검열당국이 음반 제조업자들을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항이었고, 동시에 시국을 잘 넘기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²³⁾

21) 「非常時を忘れるな」, 『東京朝日新聞』 1936년 7월 2일자 11면.

22) 小川近五郎, 『流行歌と世相：事変下に於ける歌謡の使命』 日本警察新聞社, 1941, pp.173-174.

23) 小川近五郎, 『流行歌と世相：事変下に於ける歌謡の使命』 日本警察新聞社, 1941, p.178.

4. 음반검열의 규모

그럼, 실제 어떤 음반이 검열에 의해 처분되었고 그 수는 어느 정도이며 처분의 종류는 무엇인지 검열의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934년 8월부터 개정출판법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검열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치안경찰법 제16조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졌다. 1933년 10월부터 1934년 8월까지 치안경찰법에 의해서 금지된 음반을 살펴보면 <표1>²⁴⁾과 같다. 치안경찰법으로는 발매반포금지나 제작정지의 처분을 내릴 수 없었으므로 처분 내용 중 ‘금지’는 가두연주금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에 의하면 1933년 10월이 2건, 1938년 3월 6건, 6월이 1건, 7월이 5건, 8월이 2건이다. 금지 음반은 만담과 만자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유행가는 2건이며, 처분이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1934년 9월 이후의 음반 제목 등과의 비교에 의해 5·15사건과 관계된 2건은 안녕문란으로, 그 외는 대부분 풍속괴란으로 추정된다.

<표1> 개정출판법 시행 전 치안경찰법(제16조)에 의한 처분 음반

음반제목	장르	음반회사	음반번호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이유	적용법
5·15事件 血涙の法廷	묘사극	쓰루	特281AB 特282AB	1933.10.7	금지	안녕	치경법 (제16조)
5·15事件行進曲	애국가 소화유신	쓰루	特283AB	1933.10.7	금지	안녕	치경법
數え唄 娘づくし	만자이	킹	K843AB	1934.3.2	금지	풍속	치경법
新婦學教	난센스 고무타	리갈	66061AB	1934.3.19	금지	풍속	치경법
君の生れ	만자이	리갈	66114AB	1934.3.28	금지	안녕	치경법
廓情調	만담	폴리돌	1049AB	1934.3.28	금지	풍속	치경법
續廓情調	만담	폴리돌	9512AB	1934.3.28	금지	풍속	치경법
白酒の唄	조선잡가	빅타	49201AB	1934.3.28	금지		치경법
のんき節	만자이	데이치쿠	5645B	1934.6.6	금지	풍속	치경법
吉原の一夜	만담	센타	CR519AB	1934.7.11	금지	풍속	치경법
藝者エロ戰術	만담	톤보	15555AB	1934.7.23	금지	풍속	치경법
新婚箱根の一夜	라쿠고	폴리돌	855AB	1934.7.23	금지	풍속	치경법
新婚箱根の氣分	만담	콜롬비아	26753AB	1934.7.23	금지	풍속	치경법
廓情景	만담	콜롬비아	26338AB	1934.7.23	금지	풍속	치경법
春の思出	유행가	킹	K20100A	1934.8.6	금지	풍속	치경법
戀の小座敷	유행가	킹	K20100B	1934.8.6	금지	풍속	치경법

다음으로, 개정출판법 시행 이후 자료가 확보된 1937년 12월까지의 검열상황에 대해서 표로 정리하면 논문말미에 수록한 <부록 표>²⁵⁾와 같다. <부록 표>

24) 内務省警保局, 『出版警察報』 제71호, 1934, p.71의 282-283에 기재된 표를 기본으로 작성하였다.

25) 内務省警保局, 『出版警察報』 제71-113호, 1934-1938, 복제판, 不二出版, 1981-1982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에서 처분내용을 보면 발매반포금지과 제작정지가 대부분이고, 이 외에 가두연주금지 및 자발적 원반파기, 자발적 발행철회 및 원반파기, 주의 등이 있다.

‘발매반포금지’는 개정출판법 시행 이후에 발매된 음반에 적용된 것으로 출판법 제19조에 의한 것이다.

‘제작정지’는 주로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매된 것에 많이 보인다. 개정법 시행 후에 발행된 음반에서 제작정지를 받은 경우는 이미 발행된 현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불문에 붙이는 경우가 많고, 오직 각판을 제작 불가능하게 하여 장래의 제작을 정지하는 것이다. 불량 정도가 매우 가벼운 것이지만 무제한으로 이와 같은 것이 유포되는 것을 방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 행하는 처치이다. 이에 반해서 개정법 시행 전에 발행된 음반에 제작정지를 명하는 경우는 대체로 금지 정도가 앞의 경우와 달라 이미 제작된 현품에 대해서는 치안경찰법 제16조에 의해 압수되었다.²⁶⁾

‘가두연주금지 및 자발적 원반파기’는 치안경찰법에 의한 것으로 제작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원반을 파기하여 제작을 멈추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자발적 발행철회 및 원반파기’는 강제적인 처분은 없지만 음반회사업자와의 상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제작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주의’는 이후 계속 이러한 종류의 음반을 발행하는 경우는 금지할 것이라는 의미, 또는 앞으로 발행을 삼갈 것이라는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의미이다. 단지 경고해 두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업자에 대해서도 또 검열자에 대해서도 하나의 기준을 부여해두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았다. 각 경찰청은 업자에게 주의해야할 요점을 지시하고 이에 관계된 시말서도 제출했으며, 이에 의해 제작자 측은 자발적으로 원반을 파기하거나 제작을 중지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주의처치가 실제 끼치는 영향은 매우 강했다.²⁷⁾

<부록 표>를 바탕으로 음반 처분 건수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1934년 9월부터 1937년 12월까지의 기간에 처분된 음반 중 안녕에 관한 것이 27건(16.5%), 풍속에 관한 것이 137건(83.5%)으로 풍속피란을 이유로 처분된 음반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²⁸⁾

금지연도로 보면, 1934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6건, 1935년이 72건, 1936년이 56건, 1937년이 30건으로 확인된다. 1934년의 4개월은 제외하더라도 1935년부

26) 内務省警保局, 『出版警察報』 제79호, 1935, 복제판, 不二出版, 1981, p.79의 122.

27) 警保局図書課, 『出版警察報』 제84호, 1935, 복제판, 不二出版, 1981, p.84의 201-202.

28) 조선에서 1933년부터 1942년까지의 시기에 금지된 한국어음반 중 치안방해를 이유로 금지된 음반이 43종이고 풍속피란이 27종으로, 치안방해가 처분이유인 경우가 훨씬 많은 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는 풍속피란이 안녕문란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이 주목된다. 조선의 음반검열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이준희, 「일제시대 음반검열 연구」, 『한국문화』 3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터 1937년까지를 보면 처분 받은 음반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음반의 전체생산량은 1935년이 28,922,390매, 1936년이 29,682,590매, 1937년이 26,409,270매²⁹⁾로, 1936년의 음반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열에서 처분 받은 음반의 수는 감소했고, 1937년도는 음반생산량도 처분된 음반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금지된 음반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내무성 경보국의 검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음반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2> 개정출판법 시행 이후의 음반 처분 건수 (안녕/풍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934년									1 (1/0)	1 (1/0)	2 (0/2)	2 (2/0)	6 (4/2)
1935년	1 (1/0)	1 (0/1)	5 (1/4)	5 (0/5)	6 (5/1)	7 (0/7)	10 (1/9)	7 (1/6)	14 (0/14)	3 (0/3)	5 (0/5)	8 (3/5)	72 (12/60)
1936년	1 (0/1)	5 (0/5)	4 (1/3)	3 (0/3)	10 (2/8)	6 (1/5)	14 (0/14)	4 (0/4)	2 (0/2)	1 (0/1)	2 (0/2)	4 (0/4)	56 (4/52)
1937년	3 (0/3)	2 (0/2)	5 (1/4)	1 (1/0)	1 (0/1)	3 (3/0)	0	0	4 (0/4)	0	7 (2/5)	4 (0/4)	30 (7/23)
													164 (27/137)

처분된 음반을 장르별로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에서 ‘만자이’에는 만자이라고 기재된 것 외에, 병사(兵隊)만자이, 가케아이우타만자이, 만예, 난센스만자이, 난센스, 에로난센스, 군대난센스, 난센스코우타, 염화도 포함시켰다. 여러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같은 곡을 다른 명칭으로 표기된 것도 있고, 취입자의 일치 등을 고려하면 모두 만자이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유행가’에는 유행청년가, 유행가집 버라이어티, 지나어유행가, 유행가 재즈송, 유행가 재즈코러스, 재즈코러스, 재즈송, 재즈코우타, 유행가 코우타집, 유행가 시국코우타, 댄스뮤직송을 포함시켰고, ‘만담’에는 재즈만담과 재즈만요를 포함하였다. ‘희극’은 드라마희극, 드라마희가극, 신가자극을 가리키며, ‘영화’는 영화극과 영화설명을, ‘코미디송’은 코미디 드라마송을 나타낸다. ‘주제가’는 어떤 주제를 나타내는지 확실하지 않고, ‘채다(彩茶)’는 중국의 민요계통의 음악으로 보인다.

<표3> 개정출판법 시행 이후 처분된 음반의 장르 분포

장르	만자이	유행가	만담	라쿠고	영화	희극	코미디송	주제가	하우타	나니와부시	시긴	강연	채다	합계
건수	75	48	15	12	4	3	1	1	1	1	1	1	1	164

29) 倉田喜弘, 『日本レコード文化史』 岩波現代文庫1100, 岩波書店, 2006, p.190.

<표3>에 의하면, 처분 받은 음반 중 만자이의 음반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만자이는 두 사람이 익살스러운 말을 주고받으며 관중을 웃기는 예능이기 때문에 자연히 외설적인 내용이 많아 대부분 풍속피란의 이유로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만자이 다음으로 검열에서 많은 처분을 받은 것은 유행가이다. 유행가는 한 시대의 풍조와 서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노래이고, 대표적인 대중오락물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행가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쉽다. 실제로 유행가에 대해서는 1934년 본격적인 음반검열을 실시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방송을 감독하던 체신성에서 내용이 저속하다고 여겨지는 유행가의 라디오방송을 금지하거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부성이 유행가를 감찰하기도 했다. 유행가에 대한 찬반논쟁은 1929년 4월 민요풍의 유행가 <동경행진곡>을 둘러싸고 신문상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³⁰⁾,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³¹⁾. 음반을 통한 유행가의 영향은 만자이보다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만자이는 감상용이 대부분이지만 유행가는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어 순진한 어린이나 일반 대중이 이것을 불러 자연히 풍교상의 문제가 일어나기 쉽고³²⁾, 음반과 라디오에 의해서 보급되는 경우 전파의 폭과 속도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열관계자들은 특히 유행가의 검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대표적인 오락으로서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인 파장이라는 의미에서, 검열에 의해 처분된 음반 중 유행가를 추출하여 그 상황을 알아보았다.

<표4> 개정출판법 시행 이후 처분된 유행가 음반 상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체 음반 처분건수
1934년									0	1	0	0	1	6
1935년	0	0	2	0	0	1	3	1	1	1	3	1	13	72
1936년	0	1	0	0	2	4	4	1	0	0	1	3	16	56
1937년	0	1	0	0	1	2	0	0	4	0	7	3	18	30
													48	164

<표4>는 처분된 유행가의 음반 상황을 나타낸다. 전술했듯이 검열에 걸린 전체 음반의 건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는 데 비해서 유행가의 경우는 반대로 처분 음반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0) 「文芸日曜附録 民謡への公開狀と抗議」, 『読売新聞』 1929년 8월 4일자 4면.

31) 「流行小唄の洪水に門を閉じる小学校」, 『東京日日新聞』 1929년 8월 28일자 석간.

32) 「檢閲鏡にうつるレコード」, 『東京朝日新聞』 1938년 7월 30일 3면.

처분 받은 유행가 음반은 1935년이 전체 처분 음반 72장 중 13장, 1936년은 56장 중 16장, 1937년은 30장 중 18장으로 그 수가 많아졌고, 비율로 보아도 각각 18%, 29%, 60%로 처분된 음반 중 유행가 음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일전쟁 발발 이후인 1937년 9, 11, 12월의 상황을 보면, 전체 처분 음반건수가 각각 4건, 7건, 4건인데 그 중 유행가가 각각 4건, 7건, 3건으로, 처분된 전체 음반건수 15건 중 14건이 유행가 음반임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중일전쟁 발발 직후 유행가 음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의 <표3>에서 주목되는 것은 검열 음반 중에는 양악(서양클래식음악)은 전혀 없고, 일본전통음악은 하우타 1곡과 나니와부시 1곡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양악과 일본전통음악에 대한 검열 방침은 당시 내무성 경보국 도서관의 음반검열주임이었던 오가와 치카고로에 의해서 알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검열은 속되거나 비속함이나 사적 감정을 경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 특히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유행가에 무게가 주어졌으며, 양악과 일본전통음악중에서 나가우타, 기요모토, 도키와즈, 하우타, 고우타는 오랜 전통과 연찬의 집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술성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³³⁾ 따라서 만자이·만담·라쿠고 등 화술에 의한 전통예능과 대중가요인 유행가와는 달리 양악과 일본전통음악은 검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웠음을 알 수 있다.

5. 음반검열의 사례

앞서 「음반검열의 기준과 방침」에서 살펴보았듯이 음반 검열은 출판물의 검열기준에 의해서 ‘안녕문란’과 ‘풍속괴란’을 이유로 이루어졌다. 그럼 처분된 음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다.

1) 안녕문란

개정법 시행 이후에 발매된 음반 중 안녕문란을 이유로 처분을 받은 최초의 음반은 쓰루레코드 발매의 만자이 <병사난센스 명량한 병사 척후의 권>(兵隊ナンセンス 朗らかな兵隊 斥候の巻)으로, 1934년 9월에 제작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이유는 보초, 척후 등 군의 근무를 화제로 하여 군의 통제, 기율을 도리에 맞지 않는 용어로 다루어 엄숙해야하는 군의 근무를 우롱하고 있으므로 불온당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안녕문란 출판물의 검열표준’에서 A-(갑)-(8)의

33) 「檢閲鏡にうつるレコード」, 『東京朝日新聞』 1938년 7월 30일자 3면.

군국존립의 기초를 동요시키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닛토레코드의 유행가 <비상시온도>(非常時音頭)는 개정출판법 시행 전에 발매된 음반으로 1934년 10월에 제작정지와 함께 제품의 압수가 결정되었다. 가사 1절에 ‘소화유신을 피와 피로 맹세하여 요이쇼, 잠에서 깨라고 올리는 종돈토네’라고 있는데, ‘소화유신’은 전술한 5·15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사건을 찬양하고 있고, 제2, 제3의 5·15사건을 일으키도록 종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검열표준에서 A-(갑)-(5)와 (8)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폴리돌레코드에서 발매한 병사만자이 <영정의 권>(營庭の卷)은 군인의 출정이나 전사를 기피하고, 야스쿠니신사의 제례를 조롱하는 듯한 표현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1934년 12월 제작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 같은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몰이해와 해학을 넘은 표현으로 처분을 받은 것은 테이치쿠레코드에서 발매한 만자이 <손님분위>(お客本位)인데, 이것은 개정출판법 시행 이후 발매반포금지 처분을 받은 최초의 음반이다. 이미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처분된 리갈레코드의 만자이 <그대의 탄생>(君の生れ)이나 <영정의 권>의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음반이 제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일반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라도 발매금지 처분을 내린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의 제사 대상을 만자이의 화제로 하여 처분을 받은 음반은 이외에도 1935년 3월에 제작정지처분을 받은 타이헤이레코드 발행의 만자이 <동경토산>(東京土産), <명량한 수병 고향의 권>(朗らかな水兵 故郷の卷) 등이 있다.

테이치쿠레코드의 만자이 <만담스고로쿠>(お笑い双六)는 대화 중 성덕태자의 이름을 외설적으로 사용하고 모독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어 이것이 문제가 되어 1935년 12월에 발매반포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출판물 검열표준에 있어 A-(갑)-(1)의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테이치쿠레코드의 시긴(詩吟) <조 순직오경관 만무인 아마노소좌 고병시>(弔殉職五警官挽武人天野少佐告兵詩)는 2·26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1936년 5월 4일에 제작정지 처분을 받은 음반이다. 이 음반은 3월에 취입하고 발행에 관해 상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어서 계엄사령부는 혐의를 거쳐 시국이 안정될 때까지 발행을 보류하자는 방침을 세웠으나 업자는 이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않고 발행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영화나 연극 등에 있어서도 2·26 사건 관계의 작품은 상연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것은 출판물 검열표준에서 A-(갑)-(5)와 관련있는 사항으로 해석된다.

1937년 4월 19일에는 제20회 총선거를 겨냥하여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³⁴⁾가 에디스레코드에서 취입한 2장의 음반 <입후보인사>(立候補挨拶)가 발매금

지 처분을 받았다. 정부의 재 해산을 논하고 있는 부분이 불온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총선거의 정견발표 음반이 금지된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³⁵⁾, 선거연설마저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해 백대공사에서 발행하고 대장성의 신보에 의해서 11월 8일에 금지된 지나어유행가 <철제하적 가녀>(鐵蹄下的歌女)와 <의용군행진곡>(義勇軍行進曲)은 적국의 압박하의 고통을 여성의 목소리로 비통하게 노래함으로써 항일감정을 선동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발매반포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 음반들은 외국에서 발행된 것이어서 출판법 제20조³⁶⁾가 적용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안녕문란을 이유로 처분 받은 음반은 주로 야스쿠니 신사의 제사에 관한 인식부족, 군기를 우롱하는 가사, 5·15사건이나 2·26사건과 같은 반란사건을 다룬 것, 황실 조상에 대한 모독이나 항일감정의 선동 등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풍속괴란

전술했듯이 풍속괴란을 이유로 처분 받은 음반은 137건으로, 안녕문란을 이유로 처분된 음반 27건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많은 사례를 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사사키 준이치(佐々木俊一) 작곡의 <섬 아가씨>(島の娘)는 1934년 당시 대 인기를 끈 유행가로 빅타레코드의 유행가집으로 발매된 음반이다. 1933년 11월 20일 고우타 가쓰타로(小唄勝太郎)가 취입한 것으로 검열 처치의 심의에 올려지기는 했으나 불문에 붙여진 음반이다. 『東京朝日新聞』에 의하면³⁷⁾, 고우타 가쓰타로는 1934년 7월 16일 밤에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로 되어 있었으나 제1절 가사 중 ‘아가씨 16세 연정’과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이와 하룻밤의 정’이 풍교 상 문제가 있다고 하여 체신성으로부터 삭제 명령받았다. 체신성에 의하면, 음반과는 달리 라디오는 어떤 가정에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금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제가 된 가사를 급히 수정하여 방송했지만, 음반으로는 수정되지 않

34) 일본의 정치가. 중의원명예의원. 동경도명예도민. 헌정(憲政)의 신, 의회정치 아버지라 불린다.

35) 『東京朝日新聞』 1937년 4월 19일 석간.

36) 법률 제15호 출판법 제20조 외국에서 인쇄된 문서도화가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내무대신은 그 문서도화의 내국에서의 발매반포를 금하고 그 인본을 차압할 수 있다. 内閣官報局, 『官報』 明治篇, 1893년 4월 14일, 2934호, p.164.

37) 「『島の娘』の小異変」, 『東京朝日新聞』 1934년 7월 14일자 7면.

은 가사 그대로 발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1934년 11월 내무성의 심의에 올려졌는데, 내무성은 음반의 검열기준과 라디오 방송의 검열기준이 성질 상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여 음반발매는 불문에 두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과 일부에 의해서 선택하여 듣는 음반에 있어서의 검열 기준은 서로 달라 음반의 경우가 좀더 가벼웠던 것을 알 수 있다.

오곤레코드가 발매한 난센스 <신혼바이킹>(新婚バイキング)은 야나기야 미키마쓰(柳家三龜松)가 취입한 것으로 1934년 11월에 제작정지를 받은 음반이다. 당시 처분을 받거나 처치의 심의에 올려진 만자이나 만담 음반 중에는 <곽정조>(廓情調), <속곽정조>(續廓情調), <요시와라의 하룻밤>(吉原の一夜), <게이샤 에로전술>(藝者エロ戦術), <신혼하코네의 하룻밤>(新婚箱根の一夜), <신혼하코네의 기분>(新婚箱根の氣分), <게이샤와 손님>(藝者とお客), <하우타 도도이쓰>(端唄都々逸), <해천산천>(海天山川) 등 야나기야 미키마쓰에 의한 것이 많은데, 이들은 가사보다도 대부분 야나기야의 색정적인 화술법을 문제로 삼고 있다. 또한 1937년 12월에 발매반포금지 처분을 받은 복조레코드의 유행가 시국고우타 <일만고우타>(日滿小唄)는 시국이나 일만 등의 표제를 사용하면서도 내용은 극히 비속적인 노래를 염가조(艶歌調)의 가창법으로 부르는 것은 불온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음반들은 풍속괴란 출판물의 검열표준에서 B-(갑)-(1)의 외설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35년 12월에 제작정지 처분을 받은 닛토레코드의 유행가 <제사정화>(製糸情話)는 연애지상, 자유결혼을 예찬하고 연애를 위해서는 가정도 방기할 것을 종용하는 것은 일본 고래의 미풍양속인 가족제도에 반한다는 점이 처분이유이고, 1936년 2월 14일에 제작정지 처분을 받은 점인레코드의 <제사정화>는 부모와 자식 간의 난륜 관계를 풍자하여 국민의 도의관을 마비시키고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듯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음반들의 처분이유는 출판물 검열표준 중 B-(갑)-(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1936년 4월 21일에 발매반포금지 처분을 받은 오곤레코드의 영화극 <아라시야마신주>(嵐山心中)는 대학생과 게이샤의 동반자살이야기인데, 풍교의 쇠신, 국민정신의 작흥이 요망되는 시점에 이와 같은 청년의 의기를 현저하게 유약, 퇴행시키는 내용의 음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개정출판법 시행 이전에 발매된 음반은 지방청의 신보에 의해서 검열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는 일본 국내음반뿐 아니라 일본에서 발행된 조선과 대만의 음반에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예는 1937년 3월 23일 조선총독부의 신보에 의한 영화극 <오몽녀>(五夢女)와 3월 9일 대만총독부 신보에 의한 채다 <진방탐낭>(進房探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상 고찰한 바에 의해, 풍속피란을 이유로 처분 받은 음반은 내용이 비속하거나 외설적, 노골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이 외에 미풍양속 저해나 난륜적인 가사, 전시 하에 있던 당시의 시대사조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 등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검열은 가사의 내용뿐 아니라 가창방법이나 화술법 등의 표현 방식도 대상이 되었음을 알았다.

6. 결론

본고에서는 전시 하 일본이 대중을 통제하고 선동하기 위해서 펼친 음악에 대한 다양한 통제정책 중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시작된 음반검열에 초점을 맞추어 그 규모와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의 음반검열은 청년 장교들에 의한 반란사건인 5·15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음반검열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치안경찰법에 의해서 단속되었기 때문에 제재에 한계가 있었으나 1934년 8월부터 개정출판법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검열이 시행되어 발매반포금지, 제작정지 등 보다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음반검열은 내무성 경보국 도서과에서 담당했으며, 그 기준은 음반을 출판물에 견주어 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괴란시킨다고 인정되는 것에 적용되었다. ‘안녕’에 관한 것은 황실의 모독과 군주제 및 의회제도의 부인, 법률의 곡설, 공산주의·테러·범죄·식민지 독립운동의 선동, 군사·외교상의 지장 초래, 사회불안 야기, 전쟁도발의 염려 등이 주요내용이고, ‘풍속’에 관한 것으로는 외설·난륜·잔인한 사항, 풍속 저해, 선정적 표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열이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지만 대중의 기호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음반회사의 영업방침에 의해 음반의 내용이 크게 쇄신되지는 않았고, 1933년 이후 ‘비상시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회풍조는 향락적인 경향이 있어 음반내용의 정화가 이상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1934년부터 1937년까지의 음반검열의 사례를 분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금지된 음반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검열에서 불이익을 당해 판매수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음반회사들이 대중적인 음반을 생산하면서도 내무성의 검열에서 걸리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검열에서 처분 받은 음반은 안녕문란의 이유보다 풍속괴란의 이유의 음반

수가 5배나 많았다. 같은 시기에 조선에서 금지된 한국어음반이 풍속괴란보다 치안방해가 처분이유인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조선의 음반검열 결과는 식민지의 특수성이 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처분된 음반을 장르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은 만자이이고 그 다음이 유행가가 따르는데, 대표적인 오락으로서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큰 유행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검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처분된 음반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유행가의 처분 음반 수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는 금지된 음반 중 대부분이 유행가 음반이어서 중일전쟁을 계기로 유행가에 대한 검열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검열에서 처분을 당한 음반의 내용을 보면, 안녕문란으로는 야스쿠니신사의 제사에 관한 인식부족, 군기를 우롱하는 가사, 5·15사건이나 2·26사건과 같은 반란사건을 다룬 것, 황실 조상에 대한 모독이나 항일감정의 선동 등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고, 풍속괴란으로는 비속하거나 외설적, 노골적인 내용, 미풍양속 저해나 난륜적인 가사, 당시의 시대사조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 그리고 색정적인 가창방법이나 화술법 등이 문제가 되었다.

중일전쟁 전까지 음악에 대한 통제는 시국에 적절하지 않은 음반을 정화하는 ‘검열’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이 시기를 ‘소극적 통제’의 시기라 일컬을 수 있다. 반면에 중일전쟁 발발 후에는 음반검열의 강화와 함께 국민정신총동원의 기치 아래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노래, 이른바 군국가요 풍의 노래가 내각정보부, 대정익찬회, 육군성, 신문사, 출판사 등의 주최로 현상모집되었고³⁸⁾, 이 노래들은 정부의 음악정책에 따라 국민가요의 형태로 보급되기도 했다. 나아가 태평양전쟁 후에는 정보국과 내무성의 방침에 의해 미영 재즈음악을 금지하는 미영음악의 추방령이 내려지기도 했다³⁹⁾. 따라서 중일전쟁 발발 후에는 전시 체제가 뚜렷해짐에 따라서 음반에 대한 검열 강화와 더불어 군국가요와 국민가의 독려, 미영음악 추방운동까지 동시에 진행되어 가는 ‘적극적인 통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1934년부터 1937년까지의 음반검열에 대해서 고찰하였으나 앞으로 1938년부터 태평양전쟁이 끝날 때까지의 시기에 대한 음반검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다면 전시 하 일본의 음반검열의 전체적인 모습과 시대 상황 등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리라 생각된다. 이는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38) 倉田喜弘, 『「はやり歌」の考古学—開国から戦後復興まで』文芸春秋, 2001, pp.197-204.

39) 「米英音楽に追放令」, 『朝日新聞』1943년 1월 14일 3면.

【참고문헌】

- 이준희(2007) 「일제시대 음반검열 연구」, 『한국문화』 3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アサヒレコードを街頭で演奏差止め」, 『東京日日新聞』 1933년 10월 7일자 11면.
- 印刷局, 『官報』 明治篇, 1900년 3월 10일, 5004호, p.154.
- 内川芳美編·解説(1973) 『マス・メディア統制 第1』 現代史資料 第40, みすず書房, p.285, 365.
- 小川近五郎(1941) 『流行歌と世相: 事變下に於ける歌謡の使命』 日本警察新聞社, p.111, pp.173-178.
- 倉田喜弘(2006), 『日本レコード文化史』 岩波現代文庫1100, 岩波書店, p.190.
- 倉田喜弘(2001), 『「はやり歌」の考古學—開國から戦後復興まで』 文藝春秋, pp.197-204.
- 「“血涙の法廷”閉幕」, 『名古屋新聞』 1933년 10월 11일자 10면.
- 「檢閲鏡にうつるレコード」, 『東京朝日新聞』 1938년 7월 30일 3면.
- 「『島の娘』の小異變」, 『東京朝日新聞』 1934년 7월 14일자 7면.
- 「時の話題 レコードも檢閲」, 『東京朝日新聞』 1934년 8월 1일자.
- 内閣官報局, 『官報』 明治篇, 1893년 4월 14일, 2934호, pp.163-164.
- 内閣官報局, 『官報』 1934년 5월 2일, 2197호, p.33.
- 内閣官報局, 『官報』 1934년 7월 18일, 2263호, pp.409-412.
- 内務省警保局(1981-1982) 『出版警察報』 제71-113호, 1934-1938, 複製版, 不二出版.
- 「非常時を忘れるな」, 『東京朝日新聞』 1936년 7월 2일자 11면.
- 「文藝日曜附録 民謡への公開狀と抗議」, 『讀賣新聞』 1929년 8월 4일자 4면.
- 「米英音樂に追放令」, 『朝日新聞』 1943년 1월 14일 3면.
- 森本敏克(1975), 『音盤歌謡史』 白川書院, pp.97-102.
- 矢澤寛(1995) 『戦争と流行歌—君死にたまふことなかれ』 社會思想社, p.66.
- 「流行小唄の洪水に門を閉じる小學校」, 『東京日日新聞』 1929년 8월 28일자.

<부록 표> 개정출판법 시행 후의 처분 음반

(○은 개정출판법 시행이전에 발행된 것)

(정지: 제작정지, 압수: 현품압수, 발금: 발매반포금지, 철회: 자발적 발행철회,

과기: 원반과기, 가금: 가두연주금지, 출판법: 출판법 제19조, 치경법: 치안경찰법 제16조)

음반제목	장르	음반회사	음반번호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 이유	적용법
兵隊ナンセンス 朗らかな兵隊 斥候の巻	만자이	쓰루	7178	1934.9.	정지	안녕	출판법
非常時音頭	유행가	닛토	6254B	1934.10.	정지/압수	안녕	치경법 ○
歌づくし	만자이	닛토	試作盤 6988,6989	1934.11	사전제작 금지	풍속	출판법
新婚バイキング	난센스	오곤	A19344A	1934.11	정지	풍속	출판법
營庭の巻	병사만자이	폴리돌	4207AB	1934.12	정지	안녕	출판법
端唄 都々逸	만자이	콧카	5523AB	1934.12	정지/압수	안녕	치경법 ○
お客本位	만자이	테이치쿠	6053A	1935.1	발금	안녕	출판법
芝居行進曲	만자이	리갈	65363	1935.2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南京豆賣り	유행가	테이치쿠	15111A	1935.3	정지	풍속	출판법
東京土産	만자이	타이헤이	4063A	1935.3	정지/압수	안녕	치경법 ○
藝者とお客	만담	폴리돌	193532AB	1935.3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キューバの豆賣り	재즈송	콜롬비아	27441B	1935.3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海千山千(籠絡戦術)	영화(艶話)	닛토	5669AB	1935.3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數へ唄 筈がない	만자이	리갈	65365	1935.4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つり自慢	만자이	테이치쿠	5422	1935.4	정지	풍속	치경법 ○
野崎詣り	라쿠고	에토와르	1014	1935.4	발금	풍속	출판법
義眼	라쿠고	야치요	3209AB	1935.4	발금	풍속	출판법
一休の買物	만자이	쇼치쿠	S99B	1935.4	발금	풍속	출판법
漫才の兵隊	만자이	세이카	62AB	1935.5.4	발금	안녕	출판법
俺は兵隊 彼女と近藤勇藏	만자이	에토와르	1040	1935.5.31	주의	안녕	
東京見物	만자이	콧카	10012B	1935.5	정지/압수	안녕	치경법 ○
漫才の兵隊	만자이	노말	62	1935.5	정지/압수	안녕	치경법 ○
朗らかな兵隊 洗濯の巻	리갈만자이	리갈	66242B	1935.5	정지/압수	안녕	치경법 ○
義眼	라쿠고	쓰루	6352AB	1935.5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かわりめ(上・下)	라쿠고	톤보	15173AB	1935.6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初夢	만자이	테이치쿠	5611AB	1935.6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新婚箱根の氣分	만담	콧카	EK3170AB	1935.6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かたく抱いて頂戴ね	유행가	파로폰	E1793A	1935.6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かわりめ(下)	라쿠고	호오	P161B	1935.6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男女同權	만자이	리갈	65353A	1935.6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かわりめ	라쿠고	오곤	A115B	1935.6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のぞかれた花嫁	유행가	테이치쿠	50055	1935.7	발금	풍속	출판법
古妻太夫	만자이	타이헤이	福인C575B	1935.7	발금	풍속	출판법
ほっときなさい	재즈만담	톤보	15479AB	1935.7.17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キッスOK	유행가	타이헤이	3062A	1935.7.17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四疊半唄	유행가	타이헤이	3062B	1935.7.17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新宿の夜(上・下)	만담	태양	2410AB	1935.7.17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陽氣な兵隊さん 休憩の巻	만자이	쓰루	7100B	1935.7.18	정지/압수	안녕	치경법 ○
かわりめ(上・下)	라쿠고	닛폰	15173AB	1935.7.20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ほっときなさい	재즈만요	닛폰	P82AB	1935.7.20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てれくさい	만자이	리갈	65346A	1935.7.22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牧場のランデブー	재즈코러스	테이치쿠	15223	1935.8	주의	풍속	

結婚の心得(婦人必讀本)	만자이	쓰루	7050B	1935.8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郊外の夜	에로난센스	오곤	A180AB	1935.8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藝者とお客	만담	파로폰	E1401AB	1935.8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あわて者	라쿠고	후타미	F291AB	1935.8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痲瘡局	만자이	리갈	65718B	1935.8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漫才の兵隊	만자이	센타	511AB	1935.8	정지/압수	안녕	치경법	○
東洋の唄	유행가고우타집	스탠다드	3242	1935.9.4	발금	풍속	출판법	
吉田御殿(4)	나니와부시	세이카	66B	1935.9.4	주의	풍속		
男女同權	만자이	오리엔트	60388A	1935.9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男女同權	만자이	타이헤이	1180A	1935.9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數え歌 てれくさい	만자이	타이헤이	1180B	1935.9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男女同權	만자이	오리엔트	2788AB	1935.9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藝者とお客(上·下)	만담	쇼와	263AB	1935.9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藝者とお客(上·下)	만담	쓰루	6283AB	1935.9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カフェー情話	만자이	툰보	15589B	1935.9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いれ眼(上·下)	라쿠고	태양	2047AB	1935.9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數え唄 てれくさい	만자이	쇼치쿠	S5A	1935.9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ほっときなさい(大阪篇)	제즈만요	호오	P83AB	1935.9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かわりめ(上·下)	라쿠고	후타미	F133AB	1935.9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エロ草紙	코미디드라마송	폴로비아	26265A	1935.9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大學は出たけれど	만자이	학피	3127A	1935.10	주의	풍속		
小唄ナンセンス	가케아이 우타만자이	오리엔트	60134A	1935.10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南京豆賣り	댄스뮤직송	툰보	15704A	1935.10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製糸情話(上·下)	유행가	닛토	1002AB	1935.11	발금	풍속	출판법	
製糸情話	유행청년가	콧카	20022B	1935.11	발금	풍속	출판법	
製糸小唄	유행가	리갈	65608	1935.11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スポーツ花嫁	만자이	기린	K20065AB	1935.11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〇〇小唄	난센스코우타	히코키	70989B	1935.11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お笑い双六	만자이	테이치	15276AB	1935.12	발금	안녕	출판법	
朗らかな水兵 故郷の巻	만자이	테이치	대중반253AB	1935.12	발금	안녕	출판법	
朗らかな水兵 甲板の巻	난센스만자이	테이치	대중반267AB	1935.12	발금	안녕	출판법	
1錢違ひ	만자이	타이헤이	S142AB	1935.12	발금	풍속	출판법	○
1錢違ひ	만자이	타이헤이	4220	1935.12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數え唄	만자이	스탠다드	2825B	1935.12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製糸情話	유행가	닛토	5375AB	1935.12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ねえ興奮しちゃいやよ	주제가	쇼치쿠	SI B	1935.12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金と髪(上·下)	만자이	리갈	657AB	1936.1.29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レビュー漫才	만자이	폴리돌	3707B	1936.2.10	정지	풍속	출판법	
芝居行進曲	만자이	오리엔트	60797AB	1936.2.10	정지	풍속	출판법	
てれくさい	만자이	오리엔트	60226A	1936.2.10	정지	풍속	출판법	
製糸情話	유행가	집인	890AB	1936.2.10	정지	풍속	출판법	
ほっときなさい(大阪篇)	제즈만요	센타	69AB	1936.2.10	정지	풍속	출판법	
朗らかな兵隊(大和魂の巻)(上·下)	만자이	콧카	8260	1936.3.17	발금	안녕	출판법	
稽古屋	라쿠고	콧카	8258	1936.3.17	발금	풍속	출판법	
滑稽都々逸(下)	만자이	테이치쿠	395B	1936.3.27	발금	풍속	출판법	
天狗の夫婦喧嘩(下)	만자이	테이치쿠	378B	1936.3.27	정지	풍속	출판법	
都々逸	만자이	야요이	2025A	1936.4.6	발금	풍속	출판법	
台所ジャズ	만자이	오곤	A5152AB	1936.4.21	발금	풍속	출판법	
嵐山心中	영화극	오곤	A5150AB	1936.4.21	발금	풍속	출판법	

レビューガール(上)	만자이	테이치쿠	대중반625B	1937.1.27	발금	풍속	출판법	
レビューガール(下)	만자이	테이치쿠	5946B	1937.1.27	발금	풍속	출판법	
ハッキリしてよ	유행가	테이치쿠	1283	1937.2.8	발금	풍속	출판법	
夫婦喧嘩	만자이 (규슈만자이)	환복인 타이헤이	S566	1937.2.8	발금	풍속	출판법	
夫婦狂言	만자이 (규슈만자이)	환복인 타이헤이	S548	1937.3.3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堀の内詣で	만자이	닛토	S1662대중반	1937.3.10	정지	풍속	출판법	
進房探娘	체다(採茶)	주평 창편 질혹	80496	1937.3.17	정지	풍속	출판법	
五夢女(上·下)	영화극	오케	69	1937.3.29	정지	풍속	출판법	
海賊ブラット(上·下)	영화설명	오케	68	1937.3.29	정지	안녕	출판법	
立候補挨拶	강연	에디슨	EW525	1937.4.19	발금	안녕	출판법	
そうじゃないの	유행가	비온	1018	1937.5.24	발금	풍속	출판법	
江戸情緒	하우타 니아가리신나이	테이치쿠	1652	1937.6.8	발금	안녕	출판법	
喫茶店むすめ	유행가	코로나	148	1937.6.8	발금	안녕	출판법	
縁は異なもの	유행가	P·C·L	K104	1937.6.10	발금	안녕	출판법	
青春の波濤	유행가	쿿카	20064A	1937.9.17	발금	풍속	출판법	
結婚三段跳び	유행가	프레잔토	60030A	1937.9.17	발금	풍속	출판법	
私子供じゃないことよ	유행가	프레잔토	60030B	1937.9.17	발금	풍속	출판법	
愛のスクラム	유행가	프레잔토	60031	1937.9.17	발금	풍속	출판법	
鐵蹄下の歌女	지나어유행가	백대공사	34848A	1937.11.8	발금	안녕	출판법 제20조	
義勇軍行進曲	지나어유행가	백대공사	34848B	1937.11.8	발금	안녕	출판법 제20조	
私の彼氏は軍人よ	유행가	타이헤이	21338A	1937.11.12	발금	풍속	출판법	
若き生命も	유행가	토치쿠	K105	1937.11.	철회/파기	풍속		
東京の感情	유행가	토치쿠	K106	1937.11.	철회/파기	풍속		
漂泊ぐらし	유행가	폴리돌	2556	1937.11.	철회/파기	풍속		
また逢ふ日まで	유행가	폴리돌	2556	1937.11.	철회/파기	풍속		
日満小唄	유행가 시국코우타	복조	115A	1937.12.8	발금	풍속	출판법	
僕の戀人	만자이	테이치쿠	92	1937.12.13	발금	풍속	출판법	
歌の慰問袋	유행가집 가요버라이어티	테이치쿠	N110	1937.12.16	발금	풍속	출판법	
酒はホルモン	유행가	테이치쿠	N112	1937.12.27	정지	풍속	출판법	
珍婚自動車旅行	만자이	코쿠치쿠	1030AB	1936.5.14	발금	풍속	출판법	
珍婚自動車旅行	만자이	톤보	15507AB	1936.5.14	발금	풍속	출판법	
弔殉職五警官挽武人天野 少佐告兵詩	시건(詩吟)	테이치쿠	15375AB	1936.5.4	정지	안녕	출판법	
てれちゃうわ	유행가	닛토	赤59105B	1936.5.16	정지	풍속	출판법	
お酒小唄エロ小唄	제즈코우타	쿿카	269AB	1936.5.4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朗らかな兵隊 上官の目玉	군대단센스	쓰루	6471B	1936.5.4	정지/압수	안녕	치경법	○
數え唄テレクサイ	만자이	오리엔트	2675A	1936.5.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替唄ふきよせ	만자이	오리엔트	2675B	1936.5.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須磨の仇涙	만자이	리갈	65356A	1936.5.26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替唄ふきよせ	만자이	리갈	65356B	1936.5.26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空襲送葬曲	영화설명	시즈타	20902091	1936.6.5	발금	안녕	출판법	
陽氣な娘	유행가재즈송	테이치쿠	50348	1936.6.11	정지	풍속	출판법	
教えてネ	유행가	아사히	93A	1936.6.20	발금	풍속	출판법	

忘れちゃ嫌よ	유행가	아사히	92B	1936.6.20	정지	풍속	출판법	
忘れちゃいやヨ	유행가	빅타	53663	1936.6.25	가금/과기	풍속	치경법	
不快な議員さん(上·下)	만자이	리갈	66233AB	1936.6.11	정지	풍속	치경법	○
私しのあなた	유행가	테이치쿠	50377	1936.7.1	발금	풍속	출판법	
見捨てちゃ嫌ヨ	유행가	콧카	30002A	1936.7.1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花嫁行進曲	만예(漫藝)	리갈	67854	1936.7.7	정지	풍속	출판법	
二人の極樂	유행가재즈코러스	닛토	新赤 20013B	1936.7.18	정지/압수	풍속	출판법 치경법	
レビュー漫才	만자이	유모아	U12AB	1936.7.6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花街中継放送(上·下)	라쿠고	오곤	A274AB	1936.7.6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ほんに惱ましエロ模様	유행가	타이헤이	3029A	1936.7.6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あきらめ(上·下)	만자이	리갈	65842AB	1936.7.7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滑稽都々逸	만자이	오곤	A226A	1936.7.20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滑稽行進曲	만자이	킹	K20048AB	1936.7.20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天狗の夫婦(上·下)	만자이	쓰루	5966AB	1936.7.20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小唄都々逸(安來節入)	만자이	리갈	66126B	1936.7.20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戀の手習	레코드드라마희극	오리엔트	2714AB	1936.7.20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妾宅	레코드드라마희극	오리엔트	3037AB	1936.7.20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赤い唇	유행가	콜롬비아	26698B	1936.8.12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廓情緒新宿の巻(1·2)	만담	쓰루	6241AB	1936.8.12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廓情緒新宿の巻(3·4)	만담	쓰루	6242AB	1936.8.12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端唄都々逸	만담	태양	2260A	1936.8.15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草津湯もみ唄	만자이	야요이	2384	1936.9.8	발금	풍속	출판법	
レビューのくんだ	만자이	쓰루	6976	1936.9.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草津湯もみ唄	만자이	야요이		1936.10.	발금	풍속	출판법	
とこイツトだね	재즈송	폴리돌	633A	1936.11.11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新婚箱根風景	만담	호오	P186AB	1936.11.11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端唄都々逸	만담	뉴타이요	S10062AB	1936.12.10	정지/압수	풍속	치경법	○
可愛がってネ	유행가	밀리온	101	1936.12.22	발금	풍속	출판법	
娘アラモード	유행가재즈송	야요이	2423B	1936.12.24	발금	풍속	출판법	
ハッキリしてよ	유행가	테이치쿠	1056	1936.12.27	발금	풍속	출판법	
一夜夫妻(3)	신가자극	일동창편	N652	1937.1.8	정지	풍속	출판법	

要 旨

本稿は、日本が戦時下に大衆を統制し煽動するために行った多様な音楽政策の中でも、日中戦争の前後に開始したレコード検閲を中心に、その規模や実態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

日本のレコード検閲は1934年8月から改定出版法により本格的に施行された。検閲は、レコードを出版物として扱いながら、それが安寧紊亂であつたり、風俗壊亂な内容として認められた場合に適用された。

1934年から1937年までのレコード検閲の事例を分析してみると、時間の経過と共に禁止されたレコード数が全体的に減っていることが分かる。これはレコード會社が検閲によって販賣する際に損害を受けないよう、自發的に内部検閲を行ったことを表している。但し、流行歌の場合はむしろ時間の経過と共に禁止されたレコード数が増加しており、流行歌に対する当局の嚴しい態度が窺われる。特に日中戦争開始の直後には、禁止されたレコードの殆どが流行歌であつたのだが、これは日中戦争を境に流行歌に対する検閲がより強化されたためであると考えられる。

禁止されたレコードは、安寧紊亂のものよりは風俗壊亂のものが5倍以上も多かった。安寧紊亂の場合は、靖國神社に關する認識不足、軍規を弄ぶ表現、5・15事件などの反亂事件を扱つたもの、皇室の先祖を冒瀆する内容、反日感情を煽動するものなどが問題になった。一方、風俗壊亂の場合は猥褻な内容、良風美俗を妨げるもの、亂倫な表現、当時の時局に相應しくない歌詞、そしてエロティックな歌唱方や話し方などが問題になった。

キーワード：日中戦争、レコード検閲、流行歌、安寧紊亂、風俗壊亂

투 고 : 2009. 8. 31
1차 심사 : 2009. 9. 12
2차 심사 : 2009. 9. 26